

# 모병제 보고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 서론

본 단체는 2020년 8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18세~28세 남성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이전까지 징병제 폐지를 공약하는 것이 좋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징병제를 폐지할 수 있다. 이는 병역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한 것이다. 국회 동의 없이 징병제를 폐지하려면 대통령이 병무청장에게 신체 등급 1급부터 4급까지를 전시기로역 혹은 면제로 처분하라고 지시하면 된다. 따라서 모병제에 호의적인 인물을 경력, 나이와 무관하게 병무청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국회 차원의 모병제 도입은 징병제를 지탱하는 3대 악법인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을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단체는 이 세 법을 폐지하고, 모병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단체는 국군 규모를 3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군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할 경우, 징병제를 할 때에 비해 국방예산이 한 해 평균 2952억 원이 절약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국방 예산은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복무하는 제도가 따로 있고, 하사부터 원사까지 복무하는 제도가 따로 있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이등병으로 입대한 사람이 원사까지 복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이러한 모병제 국가에는 하사로 군 복무를 시작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비율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모집병으로 입대한 사람이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하사로 임관하는 현행 부사관 선발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일단 모집병 생활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61.5%가 모병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단체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대중들의 모병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본 보고서에 첨부하였다.

## 목차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2. 징병제 폐지 시점
3.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4. 징병제 폐지 방안
5. 예비군 폐지 필요성
6. 국방 예산을 절약하는 모병제
7. 모집병과 부사관의 통합
8. 기타 모병제 도입 근거
9. 헌법에 어긋나는 징병제
10. 군 전역자 보상 방안

##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2020년 8월 결성된 단체로서, 징병제 폐지, 군 규모 감축 등을 주장한다. 본 단체는 좌파, 우파, 중도, 진보, 보수가 힘을 합쳐서 징병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징병제 폐지를 원할 경우 이념과 무관하게 회원으로 받고 있다. 이 점이 다른 시민 단체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단체의 회원 수는 현재 약 75명 정도이며, 본 단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300명 정도이다. 한편 본 단체와 협력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 '강제징용반대'는 약 2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강제징용반대' 또한 징병제 폐지를 목표로 한다.

본 단체는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가 20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작성한 게시물이 약 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본 단체는 7개 시민단체의 협의체인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본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징병제 폐지 요구 시위, 정치권에 의견 전달, 헌법 소원, 징집병 및 징병 대상자 자살 예방 활동, 네 가지가 있다.

이 중 시위는 2020년 8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본 단체가 주최한 시위에는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참석한 징병제 폐지 시위 (2021년 4월 30일)

헌법 소원은 2020년에 1건, 2021년에 4건 제출되었다. 본 단체 회원인 청구인 5명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이 중에는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2명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헌법 소원 기자회견 (2021년 9월 27일)

징집병 및 징병 대상자 자살 예방 활동은 상담 및 치료비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9월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가 상담한 어느 한 징집병은 전방 복무 중 손목에 자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 징집병의 가족은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현행 징병제 체제 하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고 있다.

## 2. 징병제 폐지 시점

2024년 이전 징병제 폐지 필요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 부사관, 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 계급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이다.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병들은 대한민국이 실시 중인 징병제로 인해 강제로 군대에

입대한다.

국회에산정책처의 “2020 경제·재정수첩” 178번째 표에 의하면, 2020년 국군 병 규모는 35만 6000명이다.

각군별·신분별 병력 규모					
(단위: 만명)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계
장교	5.0	0.7	1.2	0.2	7.1
부사관	8.4	1.8	1.9	0.7	12.8
병	28.6	1.6	3.4	2.0	35.6
합계	42	41	6.5	2.9	55.5

주: 2020년도 정원 기준

2020년 기준 국군 장교, 부사관, 병 규모<sup>1</sup>

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즉 1.5년이기 때문에, 35만 6000명의 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해에 23만 7300명 정도의 남성이 현역 처분을 받아야 한다. 2020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르면 22만 9000명의 남성이 현역 처분을 받았다.

2020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sup>2</sup>			
(단위: 만명)			
신체 급수	처분 종류	비율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 수
1~3급	현역	81.14%	22.9
4급	보충역	13.29%	3.75
5급	전시근로역	2.69%	0.76
6급	면제	0.32%	0.09
7급	재신체검사	2.55%	0.72

위 자료를 보면 2020년 현역 판정률이 81.14%임을 알 수 있다. 2021년 현역 판정률은 아직 알 수 없으나,

1 이종후, ‘2020 경제·재정수첩’, ‘국회에산정책처’, 표 178, 2020년 6월

2 ‘병역판정검사 현황’, ‘통계청’, 2021년 7월,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8](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8)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sup>3</sup>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남성 중 90% 정도가 현역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 병장 총격 사건,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역 판정률이 높을수록 병영 부적응자의 비율도 높아지며, 자살자 수, 가혹행위 발생 횟수도 증가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낮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8년 한국 출생아 수는 64만 1594명이고, 2003년 한국 출생아 수는 47만 6958명이다. 이를 놓고 인구 절벽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본 단체는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의 현역 판정률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올라온 남성 인구 수를 바탕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현행 징집병 규모 유지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2020년 병 숫자인 35만 60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역 판정률					
태어난 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남성 수	257558	255734	245514	225823	232549
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현역 판정률	92.1%	92.8%	96.7%	105.1%	102.1%

2020년 병 숫자인 35만 60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역 판정률					
태어난 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남성 수	255057	241303	230841	244266	244468
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현역 판정률	93.1%	98.4%	102.8%	97.2%	97.1%

<sup>3</sup> 평발, 비만, 저체중인 사람을 더 많이 현역 판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20년 병 숫자인 35만 60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역 판정률					
태어난 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성 수	251371	226161	225736	227723	210989
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현역 판정률	94.4%	104.9%	105.1%	104.2%	112.5%

2020년 병 숫자인 35만 60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역 판정률					
태어난 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남성 수	186956	170125	156522	135661	
병역판정검사 받는 해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현역 판정률	126.9%	139.5%	151.6%	174.9%	

현행 병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현역 판정률<sup>4</sup>

현행 병 숫자를 유지할 경우, 2024년, 2025년, 2028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남성 중 100% 이상을 현역 판정해야 한다.

이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현역 판정률이 100% 미만인 해에도 92% 이상을 현역으로 판정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의 현역 판정률이 90%에서 92%였고, 이 때 530 GP 총격 사건(8명 사망), 임 병장 총격 사건(5명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병 규모를 줄여서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상술한 총격

<sup>4</sup> 산출방식 : (n년생 남성 수) = ((2020-n)세 남성 수)

$$(n\text{년생 남성 수}) \times (18\text{개월}) / (12\text{개월}) \times (n\text{년생 현역 판정률}) = 356000$$

n년생 남성 수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년 12월 연령별 남성 수 (2021년 1월 발표)

2020년 병 규모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경제·재정수첩” 178번째 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따라서 본 단체는 현행 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남성 중 105.1%를 현역 판정해야 한다는 점과,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의거하여, 2024년 이전에 징병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 3.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모병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가난한 사람들, 즉 흠수저만 입대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가지 않아서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즉 모병제를 도입하면 고학력자와 부유층 자제는 입대하지 않고 빈곤층 자제들만 입대한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모병제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폐해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병제를 통해 군인이 괜찮은 일자리가 되면,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제도 군대가 가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케이트 연구소(CATO Institute) 수석연구원은 2021년 기고한 글에서 엘리트 계층의 자식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최하층 계급들도 군대에 거의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sup>5</sup>

1973년 모병제 도입 시 미국 내에서도 저학력 지원자가 많은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고졸 이상의 지원병 비율 목표를 45%로 잡았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지원병의 90% 정도가 고졸 이

---

<sup>5</sup> Doug Bandow, 'In the World's Most Militarized Power, Conscription Is a Tool of War', 'Antiwar.com', 2021년 3월 10일, <https://original.antiwar.com/doug-bandow/2021/03/09/in-the-worlds-most-militarized-power-conscription-is-a-tool-of-war/>

상이다.

또 모병제 초기에 미국에선 "가난한 흑인과 백인이 군인이다", "해병대를 보라. 당신이 보는 얼굴은 흑인이 대부분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저소득 계층이 지원병의 상당수를 차지했었다. 이는 "군인이 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들어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산층 가정에서 지원병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지원병 가계의 소득 수준은 8만 7000 달러로 비지원병 가계보다 약 1만 달러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의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충원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유층은 17%, 빈곤층은 19%를 차지한 반면에 중산층의 비율은 64%에 달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한국의 모병제 논의 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모병제가 저소득 계층에게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모병제 도입 시 저학력·저소득 계층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군대에 가는 걸 문제삼는다면, 가난한 사람들만 더럽고 힘든 일을 맡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가? 자동차나 반도체 등 수많은 공산품들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고, 공항이나 지하철 등 수많은 교통 시설도 금수저들이 벽돌을 직접 날라서 지은 게 아닌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것이고 관리도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징병제에 따른 '기회비용'은 빈곤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병역에 따른 생계·부양·학업의 손실적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빈곤층의 '기회비용'을 직시했던 것이 주효했다. 우리도 정의와 공정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병제가 계층 상승의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정부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월 398만 원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모병제를 도입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빈곤층에 있는 해당 군인이나 그 가족은 대부분 중산층이 될 수 있다. 중산층에 속하는 지원병의 소득 수준도 대부분 높아질 수 있다.

모병제 도입 시 지원병의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초반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회사원 등으로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 생활자보다 평균적으로 고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고용 안전성도 높다. 지원병이 관찮을 일자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병제는 군대 문화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가기 싫은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야 지원병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징병제에서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모병제에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오류와 다르지 않다. 기성세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모병제를 주저하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군대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안보 위기가 발생하는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한국이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보다 안보 상황이 안 좋은 국가들도 모병제를 도입한 뒤 성공적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독일과 러시아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어 123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현재도 독일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고, 2022년 현재까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있다.

라트비아는 인구가 180만명 정도인 나라로 러시아 옆에 있다. 러시아 인구는 1억 4600만명이다. 라트비아는 1940년에 소련한테 강제 병합 당했다가 1991년에 독립했다. 지금도 라트비아와 러시아는 과거사 문제와 라트비아 내부의 소수 민족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라트비아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모병제를 도입하였고, 미국은 1969년 모병제 검토에 착수해 1971년에는 징병제 폐지법안을 제정했으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73년 1월에 완전 모병제로 이행한 국가이다. 검토에서 도입까지 4년이 걸린 것이다.

2020년 정규군 규모는 1973년보다 60만 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더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모병제 도입은 안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단행되었다. 1969년에 착수해 1973년 1월에 완료된 모병제 도입 기간은 베트남 전쟁이 절정에 달할 때였다. 또한 소련과의 군비경쟁도 격화되고 있었고 중국은 핵무기 증강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할 때였다. 중남미에선 사회주의 혁명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고 한반도 정세도 매우 유동적이었다.

한국에선 안보 환경이 모병제를 봉쇄하는 근거로 작용해왔다면 미국에선 거꾸로 안보 환경의 급변이 모병제 도입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2006년 모병제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반전 운동 이외에 네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입대 연령의 젊은 남성수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병력수를 크게 상회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구 구조적 현실이었다.

둘째는 모병제를 도입하는 데에 예산상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셋째는 징병제로는 군인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변화를 희망한 미군 수뇌부의 요구였다.

넷째는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징병제는 하위 계층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과 비교해보면 주목할 만한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우선 미국은 입대 자원이 넘쳐날 때 모병제 착수에 들어간 반면에, 한국은 입대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병제 도입을 꺼린다.

둘째 미국은 모병제 도입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긴 반면에 한국에선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모병제 도입을 반대한다.

셋째 미국은 개인의 권리 및 하위 계층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해 모병제를 도입한 반면에, 한국에선 병역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여전히 불온시하고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둔감하다.

끝으로 미국은 군 수뇌부가 모병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 반면에, 한국에선 육군 수뇌부가 모병제 도입을 가장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보다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모병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만큼,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안보 위기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우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징병제 폐지 방안

징병제 폐지 방안은 크게 즉각적인 징병제 폐지 방안과 단계적인 징병제 폐지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 가. 즉각적인 징병제 폐지

본 단체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징병제 폐지 방안은, 즉각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2024년 이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행 병력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 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2024년에 현역 판정률이 100%를 넘게 되고, 2024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징병제를 폐지할 경우 이를 주도한 정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징병제 폐지 방안은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 국회의원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방안으로 나뉘어진다.

### (1).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 기준을 수정하여 신체 등급 1급, 2급, 3급, 4급 판정받은 남성 중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 자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14조 제1항과 제3항은 아래와 같다.

####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 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2016. 5. 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제14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에 의하면, 현역병지원 신체 검사(모집병으로 복무하길 원하는 사람이 받는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 처분을 하고, 1급부터 4급까지

의 신체 등급일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체의 제안대로 할 경우, 군대를 가기 싫은 젊은이들은 전부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될 것이고,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은 97%<sup>6</sup>가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병역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체등급에 따른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 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간에 5급(전시근로역) 혹은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한다면 모병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원 입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동법 제14조 제1항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입대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러한 방식의 징병제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을 병무청장으로 임명하거나, 정부조직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병무청장에게 행정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1급부터 4급을 판정받은 남성 중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 자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게끔 할 수 있다.

## (2). 국회의원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

국회 차원의 모병제 도입은 징병제를 지탱하는 3대 악법인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을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본 단체는 이 세 법을 폐지하고, 모병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은 각각 1949년, 1961년, 1975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률이다. 따라서 모병제 전환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세 법률을 폐기하고 모병법을 도입하여 자원 입대를 원하는 사람의 군 입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현재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 3명이 병역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할 경우, 해당 조항은 즉각적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언제 위헌 결정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sup>6</sup> 2020년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남성 중 96.99%가 1급~4급 또는 7급으로 판정되었다.

## 나. 단계적인 징병제 폐지

### (1).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징병을 중단하길 원할 경우, 신체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제 처분하도록 대통령이 병무청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좋다. 현재 병역판정검사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징병되고,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평시 면제), 6급은 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징병을 중단하려면, 2022년에는 병역 판정 검사 3급 및 4급을 전시근로역 처분하고, 2023년에는 1급 및 2급을 전시근로역 처분해야 할 것이다. 2024년보다 늦은 시점에 징병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첫 해에는 4급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 해에는 3급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 해에는 2급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 해에는 1급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 기준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국가의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현역, 보충역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현행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따르면 조기위암, 조기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과 기저세포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한다. 이러한 병을 앓고 있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것이다. 본 단체가 단계적으로 징병제 폐지를 할 경우 병역 판정검사 4급부터 전시근로역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 (2). 국회의원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

국회의원 권한을 활용한 단계적 모병제 도입에는 3년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서는 3년간 매해 병역법 제14조 제1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 단계적 모병제 1년차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신체등급이 1급부터 2급까지인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고치고, 제2호의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을 삭제하고, 제3호의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3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병역면제"로 고친다.

#### 단계적 모병제 2년차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신체등급이 1급부터 2급까지인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신체등급이 1급인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고치고, 제3호의 "신체등급이 3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2

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병역면제"로 고친다.

#### 단계적 모병제 3년차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신체등급이 1급인 사람: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삭제하고, 제3호의 "신체등급이 2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 병역면제"로 고친다.

단계적 모병제 3년차부터는 징병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모병제가 실시될 것이다. 이 방안 또한 자원 입대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동법 제14조 제1항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 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 입대를 원하는 사람이 1급부터 4급까지의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률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진다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경우, 입법부에 특정 날짜까지 해당 조항을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명령할 것이다. 이 경우 국회가 특정 시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징병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경우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조문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 5. 예비군 폐지 필요성

예비군은 김일성이 보낸 무장 공비가 1968년에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실패한 1.21 사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창설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사관, 장교뿐만 아니라 현역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람도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한 사람의 경우 복무를 마친 지 만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합숙 형태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 5년에서 만 6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출퇴근 형태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군 훈련은 복의 무장 공비 격퇴라는 당초의 창설 취지를 상실하였고, 강제로 군대를 끌려갔다 온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2015년 5월 13일 서울 서초구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합숙 훈련을 받던 최 병장이 총으로 다른 예비군 두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sup>7</sup> 최 병장은 군 복무 시절 가혹행위와 따돌림을 당했고, 관심병사로 지정되었다.

예비군 훈련도 징병제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현역 복무, 보충역 복무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본 단체는 예비군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예비군법이 유지되더라도 강제로 징병되거나 사회복무를 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여긴다.

징병에 의해 군대를 갔다오거나 사회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폐지할 경우, '내가 군대를 갔다 왔으니 남들도 가야 한다'는 '보상심리'에 따라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던 일부 젊은이들도 모병제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 6. 국방 예산을 절약하는 모병제

본 단체는 모병제 전환을 위해 국방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는 모병제 도입이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단체는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한국군 규모를 30만명으로 줄일 경우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고 여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35만명 규모의 군대(병 규모 15만명)를 운용할 경우 한 해에 1조 203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한다. 군 규모를 40만명, 병 규모가 20만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할 경우에는 한 해에 2조 6586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한다.

---

7 전수민, '[예비군 총기사고] "다 죽어버리고 자살하겠다" 유서 관심병 출신 예비군 총기 난사 3명 사망', '국민일보', 2015년 5월 14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76708&code=11131200&cp=nv>

모병제 도입에 따른 연 평균 추가 재정 소요 <sup>8</sup>	
국군 병력 규모	한 해 추가 소요 예산
35만명	1조 2034억원
40만명	2조 6584억원
2021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원 <sup>9</sup>	

유감스럽게도 국회예산정책처는 병 규모를 10만명으로 줄이고, 군 전체 병력 규모를 30만명으로 줄일 때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하지 않았다.

본 단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 방식대로 모병제로 모집된 병에게 현행 부사관 보수의 90%를 지급하고, 2021년 이후 보수가 매년 2.8%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급식피, 피복비는 2020년 병사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021년 이후 매년 각각 3.3%, 5.0%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본 단체는 군 규모를 30만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한 해에 얼마나 돈이 더 드는지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징병제를 할 때보다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라, 덜 드는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 군 규모를 30만명으로 줄이고 모병제를 할 경우, 한 해 평균 2952억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이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병제 도입(병 규모 10만명, 군 전체 병력 규모 30만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2~2025년(단위 :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모병제 봉급 등 인건비(A)	31463	32158	32874	33611	130106	32527
징병제 봉급 등 인건비(B)	34011	34973	35918	37014	141916	35479
추가 재정 소요 (C=A-B)	-2548	-2815	-3044	-3403	-11810	-2952

<sup>8</sup> 송하훈, 국회예산정책처 모병제 전환...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 추가 예산 필요; 데일리매거진; 2020년 8월 27일, <http://dailymagazin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003097692> 에서 재인용

<sup>9</sup> 국방예산 추이; 통계청; 2021년, [https://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99](https://index.go.kr/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99)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력 수를 축소하여 한 해 평균 2952억원이 절약될 경우,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7. 모집병과 부사관의 통합

하사로 군 생활을 시작하는 제도를 폐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 이병으로 입대한 사람이 부사관으로 제대한다. 이러한 모병제 국가에서는 병 생활을 한 사람이 부사관이 됨으로써, 병들의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도 모병제를 실시한 뒤에는, 병으로 자원 입대한 사람(모집병)이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은 병 생활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하사 계급으로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사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여 원사까지 복무할 수 있게 하는 기존 한국식 제도와, 모집병으로 입대하여 원사까지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미국식, 일본식, 중국식 제도를 병행할 경우,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전자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집병과 부사관을 동등하게 대우

보통 현역병으로 지원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군대 문화를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거나, 군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길 원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현역병으로 지원한 이들(모집병)에 한하여 군 복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환원함으로써, 이들의 군 복무를 보장하고, 경력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부사관과 동일한 대우(독신자 숙소 보장 등)를 해야 할 것이다.

모집병이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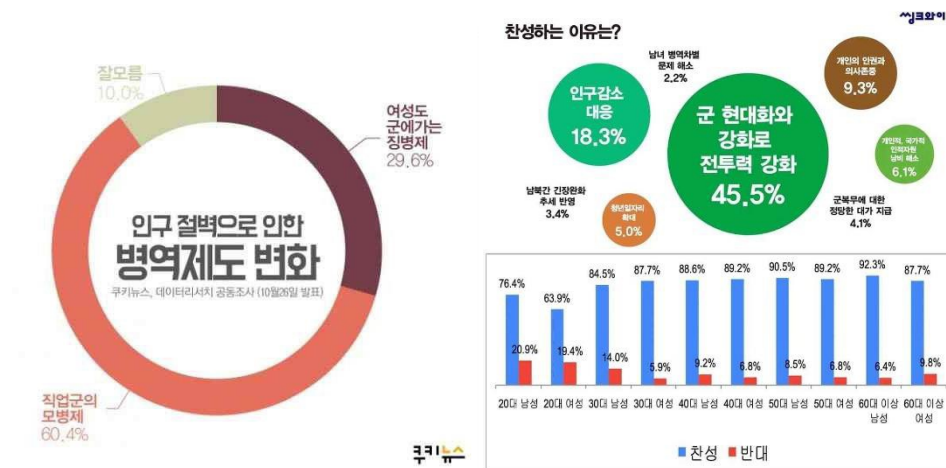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모집병을 모집할 때 모집병으로 복무한 뒤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이들이 자원 입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들도 공무원들처럼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병역법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하는 모병법에 부사관이 되려는 자는 병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것과, 모집병과 부사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5세 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8. 기타 모병제 도입 근거

### 국민적 공감대

2020년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가 모병제 도입을 찬성하였다.<sup>10</sup> 비슷한 시기 정치연구소 씽크와이가 모병제를 주제로 실시한 주관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8.1%가 모병제 전환을 찬성하였다.<sup>11</sup>



### 조선인민군 병력 규모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군 병력을 12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sup>10</sup> 윤영란, '여론조사' 모병제 국민 61% "찬성"... "초봉은 200만 원 안팎", 'KBS', 2020년 10월 16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7380>

<sup>11</sup> 모병제 전환, '대다수가 찬성하는 까닭은?', '씽크와이', 2020년 1월 10일, <https://blog.naver.com/sunghoikim/221766539956>

2021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민군 규모가 70만명에서 56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sup>12</sup> 또한 북의 경우 상당수의 군 병력이 건설 현장에 동원되기 때문에 병력 수가 많다고 해서 북측의 군사력이 남측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도하게 많은 한국 상비군 병력과 이로 인한 문제점

본 단체는 각 국가의 국민 수 대비 병력 비율을 추산하였다. 이때, 그 나라의 국적이 없는 사람은 '인구'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각 나라별 국민 수와 현역 군인 수는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신 수치를 적용하였다. 국민 수 대비 병력 비율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였으며, 그 아래 단위는 버림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 수 대비 병력 비율(1.074%)은 대한민국보다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은 중화민국(대만, 0.68%),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관계가 나쁜 폴란드(0.277%), 라트비아(0.396%)보다 높다. 중화민국, 폴란드, 라트비아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국민 수 대비 병력 비율과 병역 제도

국가	현역 군인 수	국민 수	국민 수 대비 병력 비율	병역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2185000	1444216102	0.151%	모병제
일본	247160	122948000	0.201%	모병제
독일	182055	72494153	0.251%	모병제
폴란드	105000	37797000	0.277%	모병제
라트비아	6500	1640782	0.396%	모병제
미국	1388545	332915074 10)	0.417%	모병제

<sup>12</sup> [북한 내부] 인민군 병력 대폭 감축 단행 (2) 제대군인은 농촌, 탄광에 억지로 배치해 불만 고조, '아시아프레스', 2021년 4월 5일,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4/military/heisi-2>

중화민국(대만)	163000	23855008	0.683%	모병제 11)
대한민국	555000	51669716	1.074%	징병제
아제르바이잔	126000	10223344	1.232%	징병제
아르메니아	52000	2968128 <sup>12)</sup>	1.751%	징병제
이스라엘	178000	9390000	1.895%	징병제

대한민국보다 국민 수 대비 병력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제르바이잔(1.232%), 아르메니아(1.751%), 이스라엘(1.895%)이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전쟁 혹은 국지적 군사 충돌을 겪은 나라로, 한국보다 안보 상황이 훨씬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수 대비 병력 규모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청년들의 소비가 감소하여 내수 경제가 위축된다. 또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운용 및 분배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 부문과 군대 사이의 비교 우위에 기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모병제 실시로 인한 군 급여 인상 효과가 집중되어, 소득 불균형 개선 효과를 이룰 수 있다.<sup>13</sup>

본 단체의 주장대로 한국군 병력 규모를 30만명으로 줄이고, 징병제를 폐지할 경우, 한국의 국민 수 대비 병력 규모의 비율은 1.074%에서 0.580%로 줄어들 것이다. 이는 모병제를 실시 중인 일본, 폴란드, 라트비아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군 첨단화, 한반도 평화 체제 혹은 남북 불가침 합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 한국의 안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됨에 따라 한국군 병력 규모를 25만명 이하로 줄임으로써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을 미국처럼 0.4%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단체는 2024년 징병제 폐지 이후 한국군 규모를 당분간 30만명 대로 유지하고, 한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경우, 군 규모를 25만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여긴다.

####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수 인력을 군인으로 선발

2018년 발표된 육군 장기복무부사관 경쟁률은 8.5대 1이었다.<sup>14</sup> 이를 보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

<sup>13</sup> 김대일,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경제학연구', 68(3), 139-179

<sup>14</sup> 김호준, '취업난 속 첫 10년 이상 장기부사관 모집에 경쟁률 8.5대 1', '연합뉴스', 2018년 8월 27일,

하더라도,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장기복무부사관이 될 수 있게 할 경우, 충분한 규모의 청년들이 지원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모병제를 하더라도 병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보병집약형 군대 탈피의 필요성

산업혁명에 따라 전쟁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1차·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 기술은 양차 세계 대전에서 진지전, 전격전, 총력전과 같은 병력의 양을 앞세운 대결을 야기했다. 이와 달리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 정보 혁명으로써, 정밀 타격 무기와 정밀 유도 무기의 발전과 지휘 체계의 디지털화를 유도하였다. 일련의 전쟁양상을 살펴보면 병력의 수는 전선과 전장의 면적에 반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앞으로의 전쟁이 지상군 병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래식 병력구조보다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아래 자료와 같다.

시대별 전장 밀도 변화

	고대전	나폴레옹 전쟁	미국 남북 전쟁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걸프전
10만 병력 배치 면적	1.00	20.12	25.75	248	2750	213200
전선(km)	6.67	8.05	8.58	14	48	400
1km 당 병력	100000	4750	3883	404	36	2.34
1명 당 면적 (㎡)	10	200	257.5	2475	27500	426400

세계 각국도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여 군대를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기술집약형 군대로 성공적으로 변화한 미군의 경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질적인 보강에 집중하였다. 기술집약형 병력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첨단 감시장비와 원거리 전투력 투사가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국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중심이 되는 지상군의 역할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전

쟁 양상에서는 지상군 위주의 병력 구조 대신, 첨단 과학기술군 형태의 기술집약형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도록 국방력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모병제는 당위성을 지닌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보병사단 16개, 기계화보병사단 5개, 향토방위사단 12개, 동원사단 5개로 총 38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단 전력 중 절반 이상을 보병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 육군, 해병대 인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되는 병과 또한 보병이다.

그러나 보병은 전면전에 투입되는 모든 병과, 군종들 중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병은 은폐, 엄폐를 하지 않는 이상 생존 가능성이 다른 병과에 비해 몹시 낮고, 방탄복을 입더라도 적 기갑 부대의 공격이나 포격에 노출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면전 상황에서는 은폐, 엄폐를 최우선시하여 전투에 임한다. 기동성 또한 기계화된 병기들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은 시간당 16~24km 정도이고, 걷는 속도는 시간 당 4km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전차의 최대 속도는 시간 당 60~70km에 달하며, 훨씬 빠른 공격 헬리콥터는 시간 당 250~300km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보병의 낮은 방호력과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차량화, 기계화보병을 운용한다. 대한민국 국군 역시 8사단, 11사단, 26사단, 30사단을 일반 보병사단에서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변경하였으나, 기계화 보병사단의 비중이 일반 보병사단에 비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종합하면, 이러한 한국군의 대규모 병력 집약형 구조를 현대전에 걸맞는 슬림화된 기술집약형 병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보병과 같은 재래식 병력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

## 9. 헌법에 어긋나는 징병제

본 단체는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여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징병제는 20대 남성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이라는 물개성적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들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의 병역법을 베낀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이에 불만을 가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불필요한 성별 갈등을 유발한다. 일부 정치권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징병하자거나, 70년간 남성이 징병당했으니 이제 70년간 여성을 징병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본 단체는 남성을 착취하고 확대하던 징병제를 여성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더해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징병제는 20대 남성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로 인해 끌려간 병들은 휴가, 외출, 외박을 제외한 경우에는 병영에 24시간 갇혀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많은 수의 부사관들과 장교들은 일과 시간 이후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이 또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징병제는 본질적으로 징병당사자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강요하고 있다. 거기다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징집병은 1년 6개월 동안 군인 외 다른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징집병의 경우 외출, 외박, 휴가인 때를 제외하면 거주하는 곳이 병영으로 숙박되어 있어 거의 전면적으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만, 현행 징병제 하에서 현역의 경우 병영에서 다른 군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당한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만, 현행 징병제 하에서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 이것이 완전히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만, 현행 징병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남성 개개인이 갖는 양심의 자유를 고스란히 침해한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만, 현행 징병제 하에서 현역의 경우 병영에 속박되어 있는 환경 그 자체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침해당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역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그 어떠한 집회 및 시위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없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과학 기술 인재와 연예인까지 징병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징병제 하에서 현역과 보충역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징병제 하에서 현역과 보충역은 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응당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징병제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징병제도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 근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만, 징병제는 존재 그 자체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다. 한국군에서 가혹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군대에 징집된 남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징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sup>15 16 17 18 19</sup>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만, 징병제는 존재 그 자체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많은 자유와 권리들을 경시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지만, 징병제는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제한한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기며, 병역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 4건을 제기하였다.

## 10. 군 전역자 보상 방안

군 복무자 보상 방안으로는 국가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채용할당제, 민간 기업 채용 할당제, 군 가산점, 세 가지가 존재한다.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채용할당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모병제 국가인 프랑스는 국가 공무원 중 10%를 전역 군인으로 채용한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중

---

<sup>15</sup> 윤은호, '당신들이 우리를 '철싸대'라 불러도...', '오마이뉴스', 2015년 11월 2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161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1614)

<sup>16</sup> 김유미, '군대 갈 수 있는 장애인 가려낸다', '에이블뉴스', 2005년 7월 14일,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7736>

<sup>17</sup> 김윤수, '[기동] 시각장애인이 '현역 1급' 판정', 'SBS', 2004년 12월 20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34798>

<sup>18</sup> 정동원, "'시각장애인이 원 현역 1등급'", 강원도민일보, 2005년 9월 1일,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440>

<sup>19</sup> 김동규, "'軍, 윤일병사건 주범과 장애병사 한방 수용...교도소폭행 초래'", '연합뉴스', 2016년 3월 1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257367>

11.1 퍼센트에서 16.6 퍼센트를 전역 군인으로 채용한다.<sup>20</sup> 대한민국이 국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 중 10%~20%를 전역 군인으로 채용할 경우, 병사 모집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옳다고 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채용 할당제는 대통령 직권으로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 채용 할당제의 경우 전체 직원 중 5%~10%를 전역 군인으로 채용하도록 입법하면 될 것이다.

군 전역자에 대한 할당제가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모병제를 할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입대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군 가산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나, 이는 징병제가 유지되던 상황에서의 군 가산점에 관한 것이지, 모병제 도입 이후의 군 가산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08헌바89, 2010. 12. 29.)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 법률조항이 예전에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더라도, 입법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위헌 결정된 것과 다를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될 수 있다고 보았다.

---

<sup>20</sup> '미국 연방공무원 25%가 제대군인', '정책브리핑', 2012년 10월 19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51348>